

청주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나51056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나51056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23. 1. 27 선고 2022가단6212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종혁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이경수

변론종결 2023. 10. 26.

판결선고 2023. 12. 7.

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. 1. 27. 선고 2022가단62126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12. 1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가 2015. 12. 11. D에게 200,000,000원을 이자 연 24%, 변제기 2016. 12. 11.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,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D의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보증한도액 200,000,000원, 보증기간 2016. 12. 11.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200,000,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항변 등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위 차용금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D이 원고로부터 위 200,000,000원을 차용한 것이 자신이 운영하던 E마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D의 위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, 위 상행위로 인한 위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, 그 변제기가 2016. 12. 11.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2. 8. 4.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차용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,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금채무 또한 소멸하였다.

원고는, 피고가 위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9년경 “운영하는 식자재마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이 생기니 그 때 갚겠다.”고 말하였고, 이는 위 연대보증금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위 연대보증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,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,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 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금채무의 존재를 계속 인정해 왔고, 한편으로 위와 같이 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채권행사를 고의로 지연시켜왔으므로, 피고가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연대보증금채무의 존재를 계속 인정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결국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있다(이와 같이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을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,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송인권, 판사 최지현, 판사 이효선